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57호

제출연월일 2005. 9. 28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에 따라 매수청구된 대지보상비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매수결정 대지의 보상비 지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 규정(안 제3조)
- ○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 ○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
- ○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 ○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채권의 발행액
- ○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 규정(안 제4조)
- ○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포함) 및 부대경비
- ○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 ○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8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19년도까지 소요예산 679억원

나. 합　　의 : 기획담당관

다. 기　　타

1) 입법예고(2005. 9. 2 ~ 9. 2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 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특별회계업무담당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한다.

②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8호

제출연월일 2005. 9. 28.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조정(안 제2조)

○ 소액 부징수 기준 (건당) : 600원 ⇒ 2,000원

○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인근 유사토지의 농지소득금액의 5/100
⇒ 토지가격의 1/100

나. 소하천점용허가수수료 징수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제5조 등)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 토석·사력 ⇒ 토석·모래·자갈

○ 월할 계산 ⇒ 매 1월을 1/12년

라.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점용료 감면기준 보완(안 제3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5. 8. 18 ~9. 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1조중 “소하천정비법” 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고, “토석·사력” 을 “토석·모래·자갈”로 한다.

제2조제1항중 “600원” 을 “2,000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항중 “제10조제2항” 을 “제9조제2항”으로, 같은조 제3항중 “월할계산” 을 “매 1월을 1/12년으로”로, “일할계산” 을 “매 1일을 1/365년으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로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50퍼센트

②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2.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3.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하며,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제1항과 같다.

제4조제1항 단서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중 “토석·사력” 을 “토석·모래·자갈”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2호 산정 기준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란 다목중 “토석·사력” 을 “토석·모래·자갈”로 하며, 같은표중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표 제7호 구분란중 “토석·사력” 을 “토석·모래·자갈”로 한다.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별표 2를 삭제 한다.

별표 3의 500퍼센트 이상란의 납부할 점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토석·모래·자갈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 ① ---------- 2,000원 ----------.
②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제9조제2항 ----------.
③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매 1월을 1/12년으로---------- 매 1일을 1/365년으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①----------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사천시장(이하“시장”이하 한다)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50퍼센트
<신 설>	②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현 행	개 정 안
	2.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페센트 3.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신 설>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하천법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하며,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제1항과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① ---------- ---------- ---------- ---------- ---------- ---------- ---------- ----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생 략)	제5조(----------) ① (현행과 같음)
②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유수사용,토지의 점용,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① -------- ---------- ---------- ---------- 토석·모래·자갈---------- ---------- ---------- ---.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해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1] 《 현 행 》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생 략)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토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 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생략)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3. 하천부속물의 점용	(생략)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생략)
5. 지하수의 유수 채취	(생략)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	가. 도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내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생략)

구 분	산 정 기 준
	다. (생략)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생략)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생략)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생략)

[별표 1] 《 개 정 안 》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토지가격의 1/100
	나. (현행과 같음)
	다. ---------- ---------- ---------- 토석·모래·자갈 ----------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산 정 기 준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삭 제>	<삭 제>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토석·모래·자갈 도매 ---------- 나. (현행과 같음)

구 분	산 정 기 준
	다.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2] < 삭 제 >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와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100%
3. 국가 및 시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별표 3] 《 현 행 》

점용료 등 조정산식 (제4조와 관련)

산출점용료 등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25/100〕

[별표 2] 《 개 정 안 》

점용료 등 조정산식 (제4조와 관련)

산출점용료 등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25/100+ (증가율 - 500/100) × 5/1000} 〕

관 계 법 령 발 췌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河川法 施行規則

제32조 (허가수수료)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32조관련)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나.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다.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료의 1/1,000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	없음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다. 죽목의 재식	없음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를 받는 경우	없음

◈ 小河川整備法

第18條 (公益을 위한 처분) ①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小河川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小河川의 보전 및 災害豫防 등 公益에 대한 被害를 제거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公益事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삭제 <1997.12.13>

第22條 (占用料등의 徵收) ①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流水 및 土地의 占用料, 土石·모래·자갈 등 小河川産出物의 採取料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한 者로부터 당해 占用料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不當利得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管理廳은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경우에 그 工事 또는 그 占用·사용이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것일 때에는 占用料등 또는 許可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不當利得金 및 許可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하며, 그 금액과 徵收方法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許可手數料의 減免對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地方稅法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12.29]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59호

제출연월일 2005. 9. 28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보호야생동물로부터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보호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이 입힌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장포함 7인 이내
나. 피해신고 :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농작물 피해 신고서에 근거서류 첨부 시장에게 신고
다. 현장조사 : 해당 읍·면·동장이 리·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
라.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보상금지급 심의 결정통지
마. 지원금의 지급 :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에 의거 지급하되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함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의 : 기획담당관실, 환경보호과

다. 기타

1) 입법예고(2005. 9. 2 ~ 9. 2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이라 함은 멧돼지, 산토끼, 노루・고라니를 말한다.
2. “농작물” 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주소”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시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제4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시농작물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지급업무담당국・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야생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1인)
2.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액 산정 관한사항
2. 지원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피해신고 등) ①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그 피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현장조사는 피해지역 리・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이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현장조사 후 위원회의 지원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액 산정) ①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농촌진흥청 농축작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퍼센트를 산정한다. 단,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농작물로 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지원금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며 지원금의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지원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과수 등 영년생 농작물의 피해 지원금은 당해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의신청) 피해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지원금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 작 물 피 해 신 고 서

피해농업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피해농경지	지 번	
	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농작물	1. 2. 3.
피해를 입힌 동물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근거자료 :		

【별지 제2호서식】

농작물피해 지원금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지원대상자 (주소. 성명)				
보 상 금	금 원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table>
<tr><td colspan="5">농작물피해 지원금 신청서</td><td>처리기간
30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성 명</td><td></td><td>③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②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⑥ 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⑦ 피해 금액</td><td colspan="4">원</td></tr>
<tr><td colspan="2">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1부</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table>
<tr><td colspan="4">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서</td><td>처리기간
10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성 명</td><td></td><td>③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②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⑥ 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⑦ 지원금지급 통지금액</td><td colspan="3">원</td></tr>
<tr><td colspan="2">⑧이의 신청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 지급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관 계 법 령 발 췌

농어업재해대책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5. "農作物"이라 함은 食用作物·工藝作物·飼料作物·錄肥作物·園藝作物·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